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정국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3-4745 천리안 하이텔/ 나유콤/ PSPD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담당자  
발신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명광복 :797-7413)  
제목 금융실명법, 돈세탁방지법에 대한 논평  
날짜 1997. 5. 31. (총 4 쪽)

## 참여연대 논평

### 정부추진 금융실명법, 돈세탁방지법 문제있다.

1. 정부와 신한국당이 29일 발표한 금융실명법안과 돈세탁 방지법안은 부정부패 추방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2. 특히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안은 사실상 금융실명제 자체를 무력하게 하는 것으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 선택시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한 것이나, 중소기업용 자금에 대해 출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 등은 떼땃하지 못한 음성자금을 근절하기 위한 금융실명제의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고액재산가들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것으로서 대다수 국민의 이익과는 상반된다. 사채시장을 양성화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지하자금에 단지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서 경제정의에 반하고 경제활성화에도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또한 실명확인이나 거래내용 보존기준을 시행령으로 미룬 점은 금액기준이 정치권의 이해나 정부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수시 변경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게 한다.
4. 돈세탁방지법안의 경우에도 문제점이 크다. 특히 돈세탁방지법의 핵심인 고액현금거래 신고조항이 없어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5년 이상 기록보존을 의무화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에도 은행 자체기록은 10년이상 보존하고 있으며 신고 자체가 이미 돈세탁 행위 예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조항이 삭제된 것은 돈세탁 행위 처벌수사가 전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적 전망을 갖게 한다. 신고조항이 있더라도 교묘한 분산예치를 막을 방안 장구가 시급한 시점에 신고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5. 참여연대가 작년 11월 7일 입법청원한 부패방지법안 속의 돈세탁 방지조항을 기준으로 정부안을 판단할 때, 현재 정부제출 돈세탁방지법안은 돈세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등의 여러 긍정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하다. 돈세탁방지법 제정이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댓가를 받는 정의로운 사회실현의 시작점으로 자리잡힐 수 있도록 재논의 되길 기대한다.

6. 마지막으로, 정부는 돈세탁방지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반부패 종합시책 마련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최근 한보사건과 김현철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정치인의 명값문제에 대한 처벌내용을 담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범죄행위를 단호히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 사정기관 마련이 없다면 돈세탁방지법만의 입법은 그 실효성이 반감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 부정부패를 일소할 수 있는 종합적 부패방지법안 제정과 정치관련법 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첨부 1. 참여연대 안과 정부안 비교표

2. 참여연대 입법청원 부패방지법안 中 돈세탁방지 관련조항 끝.

첨부1. 참여연대 부패방지법안 中 돈세탁방지법 조항과 정부추진 돈세탁방지법 비교

| 구 분        | 참여연대 부패방지법안  | 정부추진 돈세탁방지법안  |
|------------|--|---|
| 불법 정치자금 처벌 | 부패방지법안중 공직자윤리법<br>개정안 적용<br>: 댓가성 없는 떡값도 처벌  | 불법정치자금 규정은 현행 관련법에<br>따름<br>: 떡값 처벌하지 못함              |
| 고액 현금거래 신고 |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br>(자기앞수표 포함) 거래는<br>국세청에 신고 의무화<br>※ 분산예치 금지<br>(통보의무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br>1000만원이하 벌금) | 은행이 고액현금거래 내용<br>기록 보존<br>검찰, 세무당국은 영장없이<br>열람, 등사 가능 |
| 돈세탁 행위 처벌  | 돈세탁 행위 : 10년이하 징역<br>5,000만원 이하 벌금   | 돈세탁 행위 : 7년 이하 징역<br>3,000만원 이하 벌금                    |
|            | 돈세탁 예비,음모행위 : 3년이하 징역<br>1,000만원 이하 벌금   | 돈세탁 예비,음모행위, 2년이하 징역<br>1000만원 이하 벌금                  |
|            | 불법자금 미신고 : 2년이하 징역 또는<br>2,000만원 이하 벌금   | 불법자금 미신고 : 1년이하 징역 또는<br>500만원 이하 벌금                  |

## 첨부2. 참여연대 입법청원 부패방지법안 中 돈세탁방지 관련조항

돈세탁은 부정한 자금을 깨끗하게 세탁하여 그 추적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적발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정부패의 안전판이 되어 부패의 양산에 기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태우와 전두환비자금사건은 이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날이 갈수록 돈세탁의 수법은 지능화되고 금융기관의 음성적인 협조까지 이루어짐으로써 이를 적발하기는 거의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돈세탁을 처벌하는 법제가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돈세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부패방지법(안)은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법적 규범으로 확립되고 있는 돈세탁의 철저한 규제와 이의 처벌을 도입함으로써 부정부패의 안전판을 걷어치우고 공직사회의 투명도를 높이고자 한다. 돈세탁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이번 두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과정에서 무엇보다 절실히 제기되었다. 이른바 '금융신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 및 그 시행령 등에서도 돈세탁규제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나친 비밀보장 조항 때문에 계좌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본 법이 입법화되면 그에 따라 적절하게 위 긴급재정명령과 시행령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장의 돈세탁규제는 민주당의 자금세정규제법(안)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민변) 안을 참고하였으나 민변의 안이 간명하고 본 법의 체계에 부합하여 민변의 안을 대체로 원용하였다. 다만 돈세탁의 대상범죄에 본 법상의 범죄를 추가하였다.(제54조제5호)

### (부패방지법안중) 제 5 장 돈세탁 규제

**제54조(돈세탁금지)** 누구든지 국내 및 해외금융기관을 통한 금융거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죄

로부터 유래한 불법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은닉 또는 위장하여서는 아니된다.

1.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에 규정된 죄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지방세법 제67조 또는 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
3. 마약법 제60조 내지 제62조, 대마관리법 제18조 내지 제20조,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내지 제42조에 규정된 죄
4. 형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범한 죄
5. 이 법 제66조 내지 제83조에 규정된 죄

**제55조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보고의무등)**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당해 금융거래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이 위법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이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 (고액금융거래 보고의무)**

- ① 금융기관은 2,000만원 이상의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에 의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래발생 후 30일 이내에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전항의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을 분산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7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과의 관계)**

이 법률의 규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률에 의한다.

**제58조 (벌칙)**

- ①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59조 (벌칙)**

- ①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 (벌칙)**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60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62조 (미수범)** 제58조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제63조 (예비,음모)** 제5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58조 내지 제60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